

## 잔존물 평가

손 명 식

(세종 손해 사정(주) 상무)

보험 목적물인 건물, 기계, 동산이 화재로 인해 전소가 되는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 물체가 100% 멸실되지는 않으며 어느 정도의 물질은 남게 되는데, 이를 잔존물이라 하며 그 잔존물은 금속재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금속재는 장시간 높은 온도의 화염속에 노출되게 되면 산화 현상인 화학적 변화가 두드러져 그 금속재가 부분적으로 소실되어 버리며 더욱이 금속재중 그 소재가 비철계(구리, 알루미늄, 납 기타)인 경우는 그 용융 온도가 낮아서 소실되어 버려 잔존물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게 된다. 그러나 물체 자체가 금속재로 구성되어 있다면 금속계통이든 비철계통이든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일단은 소실되지 않고 남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건물인 경우 철근 콘크리트조는 잔존물이 철근이며, 철골조는 I-BEAM 등을 들 수 있고, 기계인 경우에는 프레임이나 주요 부품 등이 되며, 동산에 있어 금속재로 된 제품은 그 자체가 다 잔존물로 남게 된다. 이와 같이 없어지지 않고 남는 금속재는 원료로 재이용되는 가치가 반드시 있게 되며 더 나아가서 경우

에 따라서는 그 물건 자체로서의 재활용성도 존재하게 될 때도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손해보상을 함에 있어서 손해액을 과악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그 손해액 중에는 재이용 또는 활용될 수 있는 잔존물의 유무 여부와 만약 잔존물이 존재할 경우 금액으로 평가하면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히 과악한다는 것은 올바른 보험금을 산출하는 지름길이 된다. 그런데 손해 사정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재가 발생되어 보험 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과악하는 일에는 많은 신경을 쓰지만 그 손해가 발생된 물건 자체에 남아있는 가치성 즉 잔존물의 평가에 대하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 손해액에 비하여 잔존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험금을 확정시키는 요소 가운데 보험가액 및 손해액 다음으로 잔존물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손해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여 소홀히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그 잔존물의 대상을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 그 가치성이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되어 그 평가된 가치로 인해 보험금의 확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

이다. 예를 들면 재단기(절단기)에 화재가 발생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전손이 되었을 경우, 그 손해액은 절차에 따라 산정되어 확정되지만 그 전손된 상태의 재단기 자체에 남아있는 가치성을 놓고 볼 때 재단기 전체를 고철로 판단하였을 때와 그 재단기의 몸체 즉, 프레임을 제작 회사에서 재생하여 사용될 수 있는 부품으로서의 가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는 큰 차이가 있게 된다. 물론, 피해 상태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지만, 본 기계에서 보면 기계 구성이 철제로 된 프레임과 동력 및 구동장치 즉 프레스와 절단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품으로서의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건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I-BEAM을 소재로한 철골 건물의 화재 피해의 경우, 그 철골이 높은 화열에 장시간 동안 노출되어 있어 형태가 변형되어 굴곡되거나 그 치수가 변화되었으면 고철로 취급되어 재생 원료로 밖에 이용될 수 없지만, 화열을 받지 않은 부위의 철골은 절단하여 철골 재료로도 재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잔존물은 그 당시의 상태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 평가하여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금속재 물건

이 화재 피해를 입어 잔존물로 남아 있을 경우, 그 물건 자체로서 재활용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철화(비철계도 포함되는 명칭)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몇가지 사항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고철이 된 잔존물을 평가함에 있어 제일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는 우선 그 고철의 종류와 그 량을 파악하는데 있다.

종류는 철계와 비철계로 구분하여 철계는 크게 고탄소강 또는 저탄소강으로 분류하고, 비철계 역시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소재가 만들어진 제조 과정이 주조(CASTING), 압연(ROLLING), 단조(FORGING) 중 어느 과정에 의해 제조된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종류 및 제조 과정에 따라 그 고철의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재료가 물체를 구성하고 있을 때 그 종류가 한가지가 되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독립적이 아닌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체적으로 제일 많은 소재로 구성된 것의 소재를 그 물건 전체의 소재로 기준함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성 비율이 비슷한 경우는 전체의 중량에서 적정 비율로 배분하여 평가함이 옳다. 이와 같이 종류가 확인되었으면 실제의 중량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 용이한 것이 아니다. 실제적인 계근을 하였을 경우 별 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화재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보편적으로 계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이론적 산출 방식 또



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만이 파악이 가능한데 첫째, 기계 또는 시설 장치는 상품 카탈로그 또는 매뉴얼에 기록된 중량을 참고로 해당 제작 회사에 구체적으로 조회하고 둘째, 건물이나 시설물은 공사 내역서를 셋째, 간단한 것은 재료의 용적(가로×세로×높이)을 측정하여 중량을 산출하고 넷째, 상기 방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물품과 비교하여 대비할 수 있는 유사품의 중량으로 대체하여 산출한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중량 파악이 되면 이것은 잔존물 수량으로 그대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다소 감안한 수량으로 확정시키고 시중 거래 가격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하되, 가능한 실수요자의 견적 가격을 적용함이 좋다. 잔존물 회수에 따른 제반 부대 경비도 감안하여 최종적인 잔존물 가액을 산정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화재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 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작업이 중요하듯이 잔존물 평가도 중요한 사정 항목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제적인 평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일정한 방법은 별도로 없지만 대략 위에 열거한 방법을 준용하되 좀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산출 방법을 모색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작업에 있어 추정에 의해 오차를 많이 발생시키기 보다는 가능한 실측에 의하여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됨을 지양해야 되며, 부득이 추정 방법에 의거할 경우라도 가능하면 어떤 대비될 수 있는 피해비율의 정확한 많은 자료가 기초가 된 평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